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9
----------	-----

2022년 9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9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서울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 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등
 - 운영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 서울여성플라자 : 지하 3층, 지하 5층(연면적 22,519m²)
 - 스페이스 살림 : 지상 7층, 지하 2층(연면적 17,957m²)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살림

- 근거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사업

-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 관리 등

다. '23년 소요예산(안) : 17,157,911천원

라. '23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8,110,359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9,047,552천원

마.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 · 개발 및 시민체감형 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 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양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이하 “여성가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로서 여성가족재단의 출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 되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서울특별시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이에 따라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대상이 되고 예산 심의에 앞선 예산편성 단계에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된 것으로 2016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임.
- 또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 4)에 따라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사회 회의록, 결산보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제출되었음.

2 여성가족재단 설립 개요 및 운영 현황

-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통해 양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며, 주요 사업으로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사업 및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등이 있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3.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1)「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1. 출자·출연 사무명 |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6. 이사회 회의록 |
| 7. 결산 보고서 |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6.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7.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8.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9.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
10.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11.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

○ 2022년 8월 현재 여성가족재단의 운영 미션과 비전, 조직 및 인력, 주요 시설 현황, 예산 현황,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

<여성가족재단의 미션과 비전>

추진방향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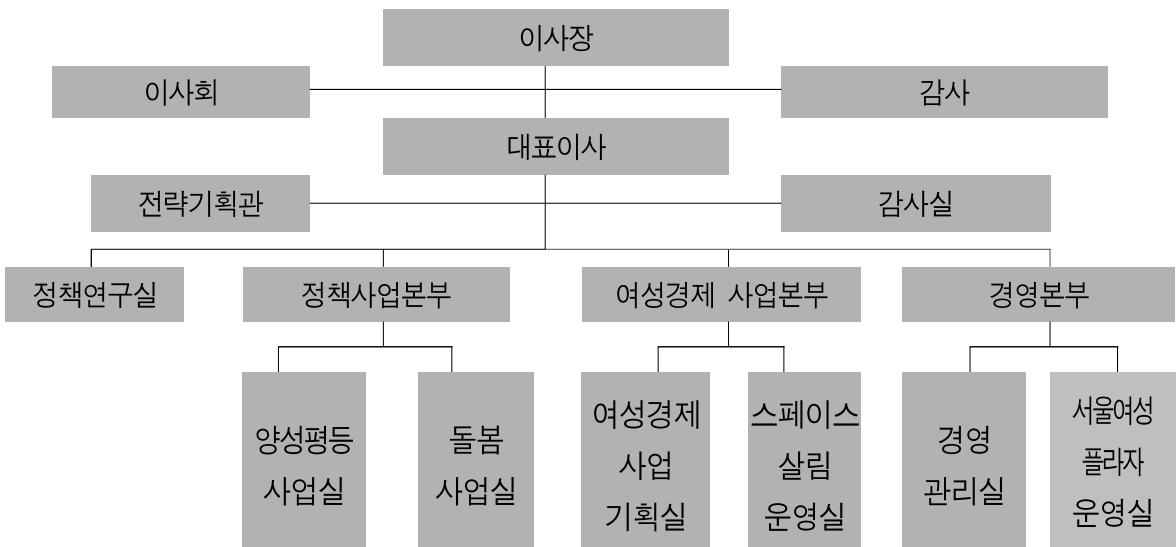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도시 서울 실현

비전

시민이 인정하는 여성가족 정책 리딩 허브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	서울형 안심 돌봄체계 구축	성장주도 경제 기반 조성	공정경영 가치 선도
○미래 전략 의제 개발	○청년세대 회복력 제고 및 사회안 전망 강화	○돌봄 콘텐츠 개발 및 현장 역량 강화	○혁신형 여성창업 기업 육성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고도화
○정책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융합기반 강화	○참여형아동안심 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경제 역 량 강화	○미래지향적 사업 동력 강화 ○경쟁력 있는 조직인사 제도 운영 ○재무리스크관리 강화

<조직 현황 : 3본부, 1단>



<인력 현황>

(단위 : 명, 2022.8.31.기준)

구분	계	대표 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 직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정원	171	1	3	6	32	33	24	12	60
현원	157	1	2	5	26	25	35	9	54

- 여성가족재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²⁾에 따라 위탁³⁾하여 그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 공간마련과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음.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을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업무형태임.

<운영시설 개요>

구분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 살림
위치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
면적	연면적 22,520 m^2	연면적 17,957 m^2
규모	지하 3층, 지상 5층	지상 7층, 지하 2층
건립기간	1999.11 ~ 2002.6	2017.12 ~ 2020.10
주요 시설	대관 공간	국제회의장, 아트홀 '봄', 시청각실, 아트컬리지 등
	사무 공간	여성가족재단 및 입주기관(단체) 사무실, NGO 활동공간, 성평등도서관 등
	편의 시설	아기쉼터,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
공유재산 운영방식 (기간)	관리위탁 (2021.1.1. ~ 2025.12.31.)	관리위탁 (2020.6.1. ~ 2025.5.31.)

- 2022년 총예산은 257억원으로 2021년 204억원 대비 53억원 증가(26.0%)하였으며, 출연금은 2021년보다 10억원 증가(6.8%)한 161억원임.
- 출연금의 주요증액 사유는 기존에 서울시 수탁사업으로 추진하던 성별영향 평가 기반 강화 사업 등 2건을 여성가족재단 고유사무화하여 출연금으로 증액편성(2억 3천만원)하고, 서울여성플라자 시설 노후화(승강기)에 따른 비용이 증액(4억 3천만원)됨에 따른 것임.
- 또한 총예산 증액은 거점형키움센터 2개소 외에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을 추가로 수탁하여 운영비 20억원이 증액된 결과임.

<2022년도 예산 내역>

- 수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증감(증감률)
계	20,371	25,663	5,292(26.0%)
출연금	15,030	16,050	1,020(6.8%)
자체수입	2,956	5,083	2,127(72.0%)
사업운영수입	273	243	△30(△11.0%)
시설운영수입	399	1,259	860(215.5%)
기타수입	358	825	467(130.4%)
이월 잉여금	784	812	28(3.6%)
대행사업수입	1,142	1,944	802(70.2%)
수탁기관 운영비	2,385	4,530	2,145(89.9%)
거점형 키움센터(1호)	1,373	1,439	66(4.8%)
거점형 키움센터(2호)	1,012	1,124	112(11.1%)
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	1,967	1,967(100.0%)

- 지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증감률)	비고
계	20,371	25,663	5,292(26.0%)	
사업예산	7,749	9,158	1,409(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 · 서울형 안심 돌봄체계 구축 · 성장주도 경제기반 조성 · 공정경영 가치선도
일반관리비	10,237	11,975	1,738(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운영경비 : 인건비, 기본경비 · 예비비
수탁기관	2,385	4,530	2,145(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형 키움센터 1,2호점 ·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 2022년 주요 성과지표가 전년과 변경되어 이전 연도와의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다 할 것이나, 2022년 8월말 기준 이미 일부는 목표를 초과했으며, 나머지도 연말까지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성과지표>

주요 성과지표

단위목표	지표	목표	실적 (22.8.31. 기준)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정책 개발 및 성과관리 정책활용도 제고	35건 534.6%	추진 중(6건 완료) 추후 작성
양성평등 가치의 선택적 확산	일·생활균형 컨설팅 기관수 시민참여 콘텐츠 개발 성인지 정책 개선 이행률	50개 5건 50%	28개 5건 55.1%
서울형 안심 돌봄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보육교직원 및 돌봄 종사자 교육 돌봄관련 컨설팅 및 상담 안심돌봄 체계 구축 연계협력 참여기관	12개 3,203명 4,882건 47개	10개 2,925명 4,056건 29개
성장주도 경제 기반 조성	성장형 여성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창업 및 경제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창업 및 경제역량강화 콘텐츠 개발	160개 4,378명 22건	160개 2,990명 22건
공정경영 가치선도	양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콘텐츠 개발	3건	2건

<최근 3년간 주요 운영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성평등 정책개발 강화	여성가족 맞춤형 선제적 정책연구 (기본과제·수탁과제)	36개	26개	36개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3,160건	3,173건	2,717건
	성주류화정책 지원 역량 강화	2,963명	3,202명	2,541명
	성인지 콘텐츠 개발	12건	13건	14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컨설팅 및 인식개선 노력	440건	531건	649건
	성평등 네트워크 참여기관 활성화	176개기관	158개기관	100개기관
돌봄의 공공성 기반 강화	안심보육환경 조성 위한 컨설팅	3,471건	4,141건	4,530건
	보육교사 역량강화 및 돌봄 콘텐츠 개발	2,681명 7건	2,461명 7건	2,323명 12건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성평등 소통공간 프로그램 운영	17회	15회	26회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사업 목표 조정

3 출연에 대한 타당성, 적절성 검토

- 최근 5년 간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한 예산규모는 총 161억원으로, 한해 평균 126억원(2018년~2022년, 5년 평균)정도인 바, 재단의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출연금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연금 지급에 대한 효과성과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여성가족재단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비율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18	11,782	7,113	60.4	61.0
2019	13,111	8,901	67.9	25.1
2020	16,825	13,859	82.4	55.7
2021	22,044	15,030	68.2	8.4
2022	25,663	16,050	62.5	6.8
총액	63,762	44,903		
평균	17,885	12,191	68.2	-

-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⁴⁾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출연을 위한 법

-
- 4)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

적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고유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동 재단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며, 재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 할 것임.
 - 이런 점에서 보면, 여성가족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성 평등 전문기관으로,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연구와 관련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또 서울시의 여성 및 가족, 보육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성가족재단 출연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종합 검토 의견

- 여성가족재단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연구·개발,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운영 등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민간위탁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스페이스살림의 창업지

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원 기능을 경제정책실로 이관하는 등 여성가족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바, 재단 출연금의 총 규모 및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하여는 2023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와 예산지원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99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등
 - 운영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 서울여성플라자 : 지하 3층, 지하 5층(연면적 22,519m²)
 - 스페이스 살림 : 지상 7층, 지하 2층(연면적 17,957m²)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살림

○ 근거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사업

-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관리 등

다. '23년 소요예산(안) : 17,157,911천원

라. '23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8,110,359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9,047,552천원

마.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 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양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 서이수 (☎ 2133-5038)